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	환경부
(부서명)	(대기관리과)
연 월 일	2021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,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가스히트펌프에 대해 신규 시설은 '22.7.1부터, 기존 시설은 '24.12.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하되, 배출허용기준의 30% 미만으로 배출하거나,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 시설에서 제외(안 별표 3 제2호나목32)라) 신설 등)
- 나.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(안 별표 3 제2호나목 비고 5 신설)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'21.12.31까지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'23.12.31까지, 공동자원화시설 및 농축협공동퇴비장 및 민간 사업장은 각각 '24.12.31까지 및 '25.12.31까지 기로 단계적으로 적용
- 다. 도서지역 액체연료 사용 발전시설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점을 조정(안 별표 8 제2호가목1) 비고 제10호 및 나목1) 비고 제7호)

백령도 설치된 시설 적용시점을 '21.1.1에서 '23.1.1로 조정하고, 연

평도 및 울릉도 설치된 시설 적용시점을 '21.7.1에서 '22.1.1로 조정

라.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 중 자가측정이 불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가측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(안 별표 11 제2호비고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○○○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: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환경부령 제 호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국립환경과학원장"을 "국가미세 먼지정보센터장"으로 하고, "기록·보존하여야"을 "기록·보존해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보존하여야"을 "보존해 야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국립환경과학원장"을 "국 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"으로 한다.

별표 3 제1호가목1)본문 및 같은 호 같은 목 2)타) 중 "시·도지사"를 각 "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,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·도지사"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가목1)가)부터 라)까지 외의 부분의 단서 및 같은 호 같은 목 3)카) 중 "시·도지사"를 각각 "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,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·도지사"로 한다.

별표 3 제2호나목32) 배출시설란 중 "냉·온수기"를 "냉·온수기·가스히 트펌프"로 하고, 같은 목 32) 대상 배출시설란에 라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) 가스히트펌프(Gas Heat Pump: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구동하여 증기압축식 냉동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펌프식 냉·난방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. 다 만, 별표 8의 일산화탄소,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의 30% 미만으로 배출하거나,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가스히트펌트 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.

별표 3 제2호나목에 비고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위 표의 13)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「비료관리법」제2조제 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 중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·변경허가 또는 신고·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·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·변경신고를 해야 한다.
- 가.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 처리시설 중 퇴비 및 액비 자원화시설: 2023년 12월 31일까지
- 나.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설치·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 및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에서설치·운영하는 시설: 2024년 12월 31일까지
- 다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설치·운영하는 시설 중 나목

이외의 시설(「비료관리법」 제11조에 따라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를 비료의 한 종류로 등록한 제조장을 포함한다): 2025년 12월 31일까지

6. 2022년 7월 1일 당시 가스히트펌프를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자로서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·변경허가 또는 신고·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·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·변경신고를 해야한다.

별표 8 제1호나목 비고 제1호마목 중 "시·도지사"를 "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,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·도지사"로 한다.

별표 8 제2호가목1) 일산화탄소(ppm)란에 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) 가스히트펌프(Gas Heat Pump: 액화석유가스 또	
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구동	
하여 증기압축식 냉동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	
는 히트펌프식 냉·난방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	
가) 2022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	400(0) 이하
나) 2022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	300(0) 이하

별표 8 제2호가목1) 질소산화물(NO₂로서)(ppm)란 1)의 바)를 사)로 하고, 같은 1)에 바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) 가스히트펌프	
(1) 2022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	100(0) 이하
(2) 2022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	50(0) 이하

별표 8 제2호가목1) 탄화수소(THC로서)(ppm)란에 6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) 가스히트펌프	
가) 2022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	400(0) 이하
나) 2022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	300(0) 이하

별표 8 제2호가목1) 비고 제5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	6)가)(2)(가)②⑦ 및	납사개질공정의 가열시설은 70(4)ppm을
거	Û 해당 시설 중 ㈜	적용하고, 에틸렌 크래킹공정 가열시설은
	현대케미칼	45(4)ppm을 적용한다.

별표 8 제2호가목1) 비고 제9호 중 "시·도지사"를 "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,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·도지사"로 하고, 같은 비고 제10호 중 "2021년 1월 1일"을 "2023년 1월 1일"로, "2021년 7월 1일"을 "2022년 1월 1일"로 한다.

별표 8 제2호나목1) 비고 제6호 중 "시·도지사"를 각각 "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,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·도지사"로 하고, 같은 비고 제7호 중 "2021년 1월 1일"을 "2023년 1월 1일"로 하며, "2021년 7월 1일"을 "2022년 1월 1일"로 한다.

별표 8 제3호라목2) 중 "시·도지사"를 "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,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·도지사"로 한다.

별표 11 제2호 비고 제2호 단서 중 "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"를 "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는 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자가측정이 필

요하지 않다고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3 제2호나목32), 별표 8 제2호가목1) 일산화탄소(ppm)란 5), 질소산화물(NO₂로서)(ppm)란 바) 및 탄화수소(THC로서)(ppm)란 6)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혂 행 제36조(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제36조(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) ① 영 별표 1의3 운영기록 보존) ①-----에 따른 1종·2종·3종사업장을 설치 ·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 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 --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---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----기록·보존 의한 방법으로 기록 · 보존하여 야 한다. 다만, 굴뚝자동측정기 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 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·5 종사업장을 설치 · 운영하는 사 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 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 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

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자 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<u>국립환경</u>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 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·보존 할 수 있다.

- 1. ~ 5. (생 략)
- ③ (생 략)

보존해야
국가미세먼
지정보센터장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